[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나. 이용자를 '갑', 제공자를 '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병'으로 지칭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28일 부터 2027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

나. 가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 '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바.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사. 가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이용료

가. '갑' 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 (10일이 공휴일인경우 그 익일로 한다)

나. '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다. '갑'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라.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마.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바.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4. 기타 비용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 · 미용비이며, 그

나.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라.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가. '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나. '을'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 의 건강관리 협조
2) '갑' 의 신변이상을 '병'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다. '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라. '병' 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2) 내역의 확인을 요청
3)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4)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5)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갑' 의 해지

'갑' 과 '병'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

보할 수 있다.

나. ‘을’ 의 해지

1)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